

論說

林業經營原則의 選定問題

金 樟 洙*

Principles of forest management

Jang Soo Kim*

(1) 緒 論

山林荒廢復舊 綠化事業은 韓國의 重大問題로 되어 있음은 從前的 山林施策의 缺陷이며 運命的인 것이다. 山林이 鬱蒼한 나라는 富強하다는 것을 林業先進國인 瑞西 獨逸, 美國, 日本 등의 例舉로 認知할 수 있으며, ha當 林木蓄積으로 보아 韓國의 林業의 零細性 後進性은 實로 寒心하다는 것은 自他가 認知하는 바이다. 특히 山林이 分布되어 있는 農村의 生活은 安定되지 못하여 山林이 正常的으로 使命을 遂行하지 못하고 掠奪의 對象者로 되어 있는 現狀은 農村生活의 安定과 山林荒廢는 因果關係이며 社會的 不均衡을 可及的 改善하여 安寧秩序를 維持함으로 山林復舊에 寄與할 수 있음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正規的 規範的으로 山林이 가진 機能을 發揮한 다는 것은 林業人의 宿願일 것이다. 山林을 正規的으로 機能을 發揮하기 위한 前提的 條件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從前的 林業經營의 指標는 무엇이었든가 또 現在 追求하고 있는 目標는 무엇인가 또는 今後에 追求하여야 할 目標를 어떻게 考究할 것인가에 對하여 考究하기로 한다. 勿論過去, 現在의 林業經營에는 여러가지 目標를 가지고 運營하여 왔다. 즉 社會的 要求를 充足하기 위하여 또는 營利性을 追求하여 經營하여 왔다. 그러나 今後에 林業經營의 高次的 窮極的 目標를 歸一하기 위하여 明白한 解答을 할 階段이 왔다고 본다. 林業經營—山林이 가지고 있는 機能을 正常的으로 發揮함으로 國民에게 經濟的 福利를 增進한다. 國民의 經濟的 福利를 最高의 目的論體系로 할 때에 林業經營의

階段目的 論系에 있어서는 副次的 派生的 目的을 編成한다. 여기서는 林業經營原則의 選定을 考察함에 있어서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을 獲得하기 위한 經濟的 福利를 達成할 수 있는 各種 副次的 派生的 目標를 追求함에 있다.

(2) 林業經營原則의 多樣性과 共通點

上述한바와 같이 林業經營原則은 窮極的인 것과 同時에 派生的 附隨的 補助的 手段인 것이다.

우선 Wagner氏가 提示한 林業經營原則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經濟性 原則
2. 收益性 原則
3. 保續性 原則
4. 生産性 原則
5. 公益性 原則
6. 森林美의 原則

野村進行的 著書「林業經營經濟學」에는 다음과 같이 七項目으로 揭示되고 있다.

1. 經濟厚生 原則
2. 經濟性 原則
3. 生産性 原則
4. 收益性 原則
5. 保續性 原則
6. 合自然性 原則
7. 環境養護의 原則

Wagner氏의 森林經理學은 元來 土地純收額價說과 保續性에 基幹을 두고 確立하였다. 土地純收額價說 (Bu說)과 森林純收額價說 (We說)과의 論爭은 長期間 中絶됨이 없었으나, 各自立場에서 즉 Bu說은 純收益性을 考慮할때에, We說은 公益性을 考慮할때에 各各 正當하다는 結論을 얻게되었다. 또 保續性에는 Hundes hagen氏의 木材供給의 保續 Judeich氏의 木材生産의 保護 Gayer氏의 土地生産力의 保續으로 解釋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保續性의 概念을 忘却한 林業經營이란 생각할수 없으며 林業先進國家인 瑞西에서는 保續原則을 固守하고 있는 것이다.

*高麗大學校 農科大學 教授

이제 Wagner 野村의 林業經營原則을 項目에서 보면 大同小異하다고 보나, 項目別로 內容을 檢討하면 差異點을 認知할 수 있다. 各項目別로 詳細한 說明은 省略하고 여기서는 主로 目的論系로 보아 高次的 目的論系와 階段的 附隨的 低次的 目的論系에서 項目別로 內容을 論述하고 林業經營에서 共通될 수 있는 目標를 選定하여 圓滑한 運營을 遂行하도록 計劃하자는 것이다.

① 經濟性 原則

林業經營은 國民多數의 經濟的 福利를 最大 目標로 하기 위하여 經濟性에 符合되는 人間의 活動 즉 經濟原則은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經濟性은 廣範圍하고 抽象的인 意義를 가지고 있고 具體的이며 數量的 尺度를 表現하지 않은 點에 있어서 收益性 즉 收益率보다 明確히 概念을 把握하지 못하지만 獨逸의 經營經濟學者 Walb氏는

經濟性 = 資本收益性 = 企業利潤率로 表示하고 있음으로 다음에 말할 收益性和 經濟性은 對立하고도 包括的으로 統一할 수 있다고 본다.

② 收益性 原則

經濟性的 意義에서 收益性이 包括된다고 하면 林業經營의 高次的 目的論系를 達成하기 위하여 收益性은 重要한 一翼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즉 收益性은 資本과 收益 즉 利益과의 關係利潤率로서 具體的 數量的으로 表現하고 있다.

Dietrich氏의 “林業經營經濟學”에서 收利率의 數式을 例舉하면 다음과 같다.

1. Heyer. Endress氏

$$\frac{Au+Da-C-V-No.op}{B}$$

2. Kraft

$$\frac{Au+Da-C-V-Bo.op}{N}$$

3. martin

$$\frac{Au+Da-C-V}{B+N}$$

4. Pressler

$$\frac{Au+Da-C}{B+N+V}$$

5. Lemmel

$$\frac{Au+Da}{B+N+V+C}$$

上式中에서 martin式은 資本 즉 土地資本 (B) 林木資本 (N)에 對한 收入(主伐과 間伐) 支出(造林費, 管理費)의 關係를 表示한것으로 第一適切하다고 보겠고 특히 事前에 收益率을 計算함에 便宜하다고 보겠다.

우리는 林業經營을 合理的으로 營爲하여야 한다. 林業을 企業으로서 合理的經營을 하였을 때에는 該當立地條件에서 林木은 最高生産力을 發揮하여 材積生産이 增加될 것이며 林木生産力을 增加함으로 國民의 經濟的 福利에 貢獻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林木生産力의 增進은 合理的 經營 營爲의 결과이며 合理的 營爲는 結局 具體的으로 收益率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林木生産期間에 林木活動을 充分히 함으로 收益性的 最大를 達成하여야 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3. 保續性 原則

林業先進國에서는 19世紀 中葉까지 保續性 原則을 重要視하고 Wagner氏는 森林經理學에서 體系를 收益性和 保續性을 基幹으로 하였다. 絕對的 保續性이 具現할 前提條件은 嚴正保續作業에 있으나 具體的으로 本要件을 滿足시키기 위하여서는 林木生産力을 增進하고 價値가 많은 木材를 많이 生産하여 時間的으로 永續性 있고 技術的으로는 合理性있는 經營營爲가 必要할 것이다.

筆者는 保續性的 必要性을 姊妹關係에 있는 農業과 比較할 때에 特히 強調하며 또 林業本然의 姿勢로 經營할 때에는 이와 같은 原則은 遂行된다고 본다. 즉 林木生産力을 增進하는 方途의 前提條件과 林業의 特殊性으로 보아 本原則은 重要視되어야 한다. 本原則은 林木의 最大生産原則과 相通한다고 보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

保續性原則은 造林上의 根據를 等閑視할 수 없다. 一時的으로 많은 伐採量을 要求하면 生長量의 低下를 招來함은 勿論이며 殘存老木과 稚樹를 損傷하게 된다. 또 伐採量이 增加되면 皮燒 風倒 蟲害가 甚하여지고 伐採後地를 直

時造林할 수 있는 勞力의 要求에도 應할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點에서도 林木의 最大生産의 方向에 逆行하는 길을 거름을 알수 있으며 生産增進을 위하여 消費量에 異動이 있다고 하여도 伐採量을 無理하게 加減할 수 없으며 保續原則을 固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保續原則은 林木收穫의 保續만을 考慮하지 않고 林業基金制度를 確立하면 金員의 保有로서 金員收穫의 保續도 할수 있다. 이와같은點에서 收益性原則의 前提條件도 될수 있다.

④ 生産性 原則

Wagner氏는 生産性原則을 最大可能木材生産量의 原則으로보고 收益性原則과 같이 兩翼된 低次的 指導原則이며 後述할 公益性原則 森林美의 原則, 環境養護의 原則을 達成할 수 있는 補助的 派生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⑤ 公益性 原則

公共의 福利를 위하여 森林의 存在價値를 認識하여야 함은 勿論이며 公益性 原則 즉 國民經濟의 福利를向上함에 林業經營이 寄與하여야 한다. 즉 本原則은 林業經營의 高次的目的 論系에 있어서의 窮極目的이다. 그러면 本原則을 遂行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原則을 追從하여야 하느냐? 本課題는 本原則에 對하여 다음에 나타나야할 問題이며 再次 말한바와같이 林木의 最大生産性과 收益性의 統一體에서 形成할수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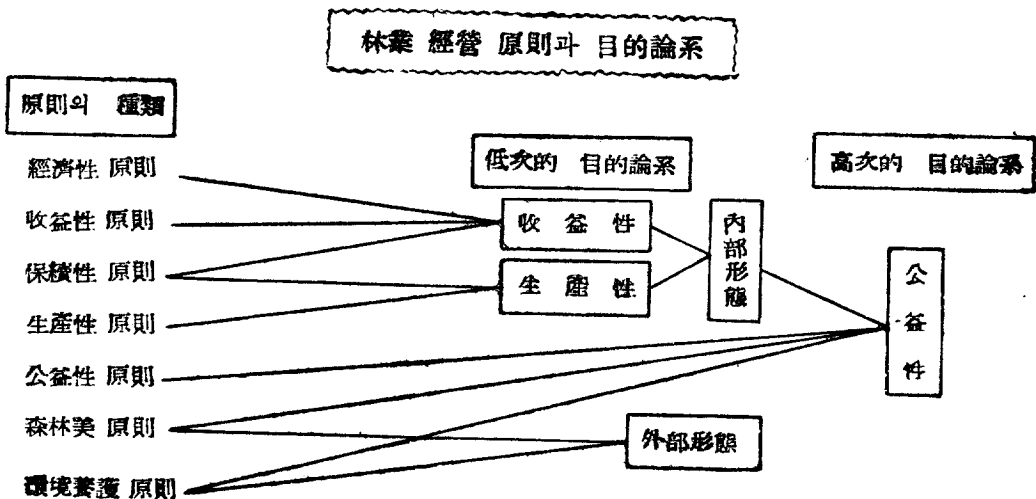
⑥ 森林美의 原則

森林自體의 存在로서 保有하는 美的價値는 風景地 Recreation의 對象地이며 國民精神에 影響을 주는 것이며 森林美를 破壞하여 全林木을 賣却하는 金員價値와 比較할 바가 얕이다. 森林美는은 國民思想 保健에 미치는 影響은 勿論이고 그 經濟的 價値는 지금 論外로 하고 森林自體를 維持하도록 固守하려면 森林이 恒常平衡狀態로 되어있어야 한다. 즉 生産性原則에서 究明한 造林上의 知識으로 森林美維持에 對한 目標을 確立함으로써 經濟公共原則에 符合되는 實務를 完遂한다고 본다. 즉 森林美를 維持하는 技術的 前提的 補助的手段으로 生産性原則을 適用하지만 森林美를 達成함으로 公益性 즉 國民福利의 增進에 寄與할 수 있다.

⑦ 環境養護의 原則

C. Wagner氏는 林業經營은 森林自體가 所有하고있는 土砂防止 土砂崩壞防備, 落石防止 風害 水害등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도록 運營 할수있는 原則이라 하였다. 從前에 森林의 効用을 直接的 間接的効用으로 區分 하었는데 間接的 効用을 充分히 發揮하면 環境養護의 原則에 符合되는 것이다.

林業經營은 直接的으로 林木의 合理的 生産을 하는 同時에 上述한 間接的 効用, 즉 保安機能을 充分히 發揮함으로 外部利害關係者 특히 連關된 産業部分과 部落民에게 充分한 利



益을 주도록 考慮하여야 한다. 즉 本原則인 森林美原則과 逆立되며 効用上으로부터 經濟性收益性 生産性原則과 對照的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外部關係와 利害가 있음으로 그 任務遂行에는 格別한 政策이 隨伴되어야 함은 勿論이지만 林業經營 自體의 高次的窮極目的에 符合시키면 自律的으로 本原則을 達成할 수있다.

以上 論述한 目的論系로 본 諸原則의 關係된 諸點은 圖示한 바와 같다

(3) 問題의 歸結

1980年 5月 F.A.O. 主催의 第五回 世界林業會議에서는 “林地의 多角的利用”이라는 課題가 中心이되고 있었다. 이는 森林의 五大効用 즉 木材, 물, 飼料, 休養 및 野生動物에 대하여 最大生産을 하면서 그 基礎로되는 資源 즉 土地의 生産力을 保有하도록 經營管理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며 長期間에 最多數의 國民에게 福利를주는 森林의効用을 強調한 것이 라 하였다.

이같이 林地의 多目的利用이란 森林經營의 第一目標로서 全世界에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그 實踐狀況은 事情이 달라짐에 따라서 勿論 달라진다. 國土에 따라 한나라에서도 地域的으로 差異가 있다. 多目的利用은 現實的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實施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各國代表의 意見은 區區하였다.

結論的으로 同會議에서는 多目的利用이라는 思考方式은 世界 어떠한 곳에서도 林業家로서는 새로운 課題이며 새로운 機會를 주는 것이 라하였고 이것은 森林이 人類의 健康과 幸福을 주는 것이라 하였다.

以上の 結論에서 보아 林地의 多目的 利用 즉 森林을 單只木材만이 아니고 물 飼料 休養 野生動物에 對한 最大資源으로서 본다는 것은 새로운 課題이다. 森林의 効用을 充分히 發揮하여 社會經濟 全體의 利益에 奉仕함에 있어서 다른 外部的 利害關係者와의 連關에서 接觸한다는 것은 無視하여서는 아니 된다. 上述한 森林美 環境養護의 原則은 林地多目的의

利用과 關係하여 施業하면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것이다. 즉 林業人이 森林自體의 存在意義가 今自然적으로 되어 森林美를 表示하고 環境養護의 責務에 到達하였을 때에 人類가 이를 多目的으로 利用하는것은 別問題가 될것이다. 그러나 林地의 多目的利用은 主로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을 줄수 있는 森林이 構成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않은가에 基因됨으로 우리들의 能力的 手段的 方法과 指標도 여기에 傾注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山林法의 草案 第一條에는 「山林에 關한 基本事項을 定하고 山林의 保護培養과 山林生産力의 增進을 圖謀하며 國土의 保存과 國民經濟의 發展이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明記하여 山林生産力의 增進 즉 生産성과 收益性의 最大를 目標로하고 高次的窮極의 目的인 國民經濟 福利에 貢獻함을 目標로 하고있다

또 林地의 多目的利用에서 말한바와 같이 森林美 環境養護의 原則을 目標로 하여 山林의 保護培養 國土의 保全을 考慮하여 國民經濟에 寄與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禁伐主義에서 脫皮하여 技術的向上으로 合理的 能率的 林業經營을 營爲함으로 今後 林業經營의 指標는 公益性을 窮極目的으로 하여 生産性 收益性을 兩翼으로하여 前進할것이다.

마호가니—란!

主로 美洲大陸에서 生産되는 Swietenia 屬 木材를 말하며 材質이 優秀하여 家具合板 建築材等 用途가 廣範圍한 木材이다 特別 우리나라에서 輸入하는 比國産 羅王과 아 피통은 材質과 用途가 前記木材에 비슷함으로 眞마호가니—는 아니지만 “필립핀 마호가니—”라고 불리우며 아프리카産 Khaya 材 역시 材質과 用途가 吸似함으로 “아프리카 마호가니—”라고 불리운다

(李)